

제 243호  
1972. 11. 10.

발행처: 서울특별시당 산하  
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 
전화 75-7824  
발행처: 서울특별시 당청본관



### 차 례

- 조 례  
제 71호 서울특별시 특수공무원장 자문위원회 제정요약... 3
- 장 례  
제 72호 서울특별시 사보안법 제정 ..... 5
- 조 례  
제 73호 서울특별시 내정공과 업무규칙 제정 ..... 5
- 장 례  
제 74호 서울특별시우정사업규칙 제정 ..... 5
- 사 례 ..... 6

. 서울특별시당 산하에 있어야 한다.  
. 서울특별시당 산하에 있어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

0953

### 조

축우종양의 증인용 혈청 시중특별지  
축우관구수당 피검료의종 계검료의종 이에  
공포한다.

시중특별시장 당 예 시  
1972년 6월 9일

별표 7 수포 사육모두가검우관구수당 피검구분표

### ㉠ 시중특별시 조제 제 713호

시중특별시 축우관구수당  
피검료 조제 총계 검료

시중특별시 축우관구수당 피검료 조제 총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단항 2 밑표 5 2 다음항 2 수  
포 사육모두가검우관구수당 피검료는 밑표  
7 2 을 삭제한다.

구 분	3	4	5	6	7
	이하	이하	이하	이하	이하
실수당 피검액	9,300 원	7,000 원	6,600 원	6,300 원	6,000 원

### 부 칙

이 조제는 197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 규 칙

시중특별시 사포발명규칙을 제정하여 이  
에 공포한다.

시중특별시장 당 예 시  
1972년 6월 9일

### ㉡ 시중특별시 규칙 제 1221호

시중특별시 사포발명규칙  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시중특별시에  
서 발명하는 사포발명제품(이하 사포  
라 한다)의 제원 및 검사 방법 기타  
사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을 목적으로 한다.  
제 2 조 (구분) 사포의 제원 및 검사 방법  
기타 사포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의  
서 한다.

제 3 조 (비모자 제원구분과 순서) 사포  
에 기재할 제원 구분과 순서는 다음  
과 같다.

1. 조 지
2. 구 지
3. 문 명
4. 고 기
5. 부 고
6. 제 규 (상호간 농침을 포함한다)
7. 시 제 관련되는 법규의 관계

<p>8. 상류 9. 하류 10. 기타</p>	<p>8. 시외, 읍외, 향외에 관한 사항 9. 기타 시외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
<p>제4조(상류) 제3조 제8호에 의한 상류에는 훈장, 포장, 내무영수장, 학무특이포장, 시상포장, 적예제수에 관한 시상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, 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.</p>	<p>제7조(제외의외)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시보제외되는 범부과장이 기타 사정에 있어서는 명예, 국, 관, 실, 의장 또는 기단의 장,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시행일 당일한 공보실장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사실) 제3조제9호에 의한 사실에는 인정직 국가공무원(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을유 이상에 상당한 자)나 5급을유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5급을유 이상의 지방공무원의 임면, 전직, 휴직,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.</p>	<p>제8조(지보제외조정) 공보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으로 시보제외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것이 내사여는 임조의 의외가 있어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지보) 제3조제10호에 의한 지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</p>	<p>제9조(시보제외기준) ①가 국, 관, 실, 과, 구청,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, 사업소, 출장소, 통사무소,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,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통령지시</li> <li>2. 국무총리지시</li> <li>3. 지방지사</li> <li>4. 지방청으로부터 하부 행정기관에 공적시행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li>5. 시정 주요시책 및 사무처리 기준</li> <li>6. 법령에 의한 면허, 인가, 허가, 승인, 단체등록(사회단체, 영구단체 기타)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li>7.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,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과 명단</li> </ol>	<p>①시장은 시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상으로 하여금 통사무소 보기 쉬운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보제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시보의 공문내제)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내시규정)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1970.9.1가 서울특별시 훈령 제301호 서울특별시시보발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</p>

**포 시**

**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호**

공공수업예정물과공공기관면장리가  
공공수업 예정물사의 종류기간을 공  
수업 예정물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  
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.

1972. 6.

서울특별시 상

1. 연방허가건월일 : 72. 6. 7
2. 예정연허년월일 : 71. 6. 3. (이수 및 연이연호 419-8008)
3. 피허가자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 지대만법민 경성우편부국외유지 세암대교이사 김 수 환
4. 예정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96번지 지진
5. 예정면적 : 4,396.5 평
6. 예정목적 : 해피포정 및 심의개발
7. 연방허가기간 : 72. 6. 4-72. 12. 30.

**공 포**

**● 서울특별시 공고 제 126호**

심방수가지우표외우회  
심외사업계획준합공고

1.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국고제 47호(71. 6. 11) 및 건설부 국고제 4호(72. 1. 31)로 신철추경지구공 도하여 구획설리사업 시행계획을 인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도시계획(도시사업법제33조1항)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도시소유가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아드리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것이 없으므로 사기 아파어

2. 이에 관하여는 71.10.15. 서울특별시 공고제 215호로 1차 공고한바 72.3.14자로 2차 및 3차 공고로 결정

정에 따라 지구적(특고선) 조성과 공 도공의 예정가 당초와는 달리 되었음이다.

3. 원적노서는 서울특별시 상 도시계획 국 국책설리1가제 제정하고 있음이다. 이 가립으로 해당지 내역지는 1966. 5. 21. 도시소유가에게 이 제서용본 발효되었으나 이 수립까지 내역지 이 중고로 지을 없

다.

- 사 공 고
1. 가립일 : 서울특별시 신철추경 지구공 도공리사업
  2. 시행일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96번지, 신외사업(건설부)
  3. 시행사 : 서울특별시 상
  4. 면 적 : 635,337 평
  5. 시행기간 : 1972(신가일) - 1975. 12. 30.

1972. 6. 9.

서울특별시 상

# 사 령

● 1972. 6. 7.

경북구 지방법무수 신 제 1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에  
의거 신청에 처함.

마포구(남북파장) 지방건축기사 임 기 1  
72. 5. 12 은부의 소청심사위원  
회의 결정에 따라 72. 1. 15 자  
감봉 3 월치분급 통일자로 취소함.  
수도국 조류기장(시정파장) 박 원 장  
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제 1 호에  
의거 신청에 처함.

상동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구 치 서  
72. 5. 19 서울특별시 소청  
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
72. 1. 15 자 감봉 6 월치분급  
감봉 3 월치분급 통일자로 변경  
취소함.

충북구 동북파장직무대리 14 성 진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.  
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.

충북구 지방건축기사 보 구 영 구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.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충북구 지방건축기원보 김 신 남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.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충북구 지방건축기원보 나 세 구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.  
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충북구 지방건축기원보 김 중 국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감봉 5 월에 처함.  
충북구 동북파장직무대리 14 성 진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신청에 처함.

충북구 지방건축기원보 정 오 학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.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서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김 학 선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

서대문구 지방건축기원 배 석 중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이 모 구 지방건축기사 유 정 명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

유 산 구 지방건축기원 이 규 정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사 수 구 지방보육기사보 신 남 운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전직에 처함.

김 수 과 지방보육기사 이 경 철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보 나 희 지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  
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● 1972. 6. 8.  
동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사부장 김 경 기  
(취임파장)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 2 호의  
규정에 의거 전직에 처함.

북학동민원리사무소 관 세 권	심 환 수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성북구 7부(남) 청법	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성동구 지방행정사무장 (사 회 파 장)	하 희 역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철계 의회회 고서준	전 함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명동보우 기 시 권 유 유 직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암곡리 의회사무장	정 함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성남구사무 지방행정주사	이 문 식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유정대 의회 갑종 6 월에 처함.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성동구청소 지방행정주사보	이 명 진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가정대 의회 갑종 6 월에 처함.	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성동구부역 지방행정주사	한 규 진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유정대 의회 정계에 처함.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성동구부역 지방행정주사보	김 소 우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유정대 의회 정계에 처함.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성동구보우 지방행정주사	정 희 역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유정대 의회 갑종 1 월에 처함.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성동구보우 지방행정주사보	김 장 수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유정대 의회 갑종 1 월에 처함.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성동구시법 지방행정서기보	정 희 조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유정대 의회 갑종 6 월에 처함.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서대문구수호사정소 지방행정서기보	박 복 태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유정대 의회 정계에 처함.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종로구보원소 지방행정서기보	윤 장 영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	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
규정에 의거 각부 5월에 처함.  
 영동로관 제정관, 지방행정주시 처 명 호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2 호의  
 규정에 의거 처함에 처함.  
 영동로관 제정관 지방행정주시보 한 명 한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2 호의  
 규정에 의거 처함에 처함.  
 영동로관 제정관 지방행정주시보 이 승 우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2 호의  
 규정에 의거 처함에 처함.  
 영동로관 제정관 지방행정주시보 유 제 철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2 호의

규정에 의거 처함에 처함.  
 ◎ 1972. 6. 8.  
 인 속 와 지방인속기사보 박 동 희  
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제 5 호의  
 규정에 의거 그 직을 면함.  
 아파로관리와 지방인속기사보 박 노 선  
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제 5 호의  
 규정에 의거 그 직을 면함.  
 영 건 과 지방인속기사보 정 진 위  
 원에 의거 그 직을 면함.

서 상 녹 별 시 장